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547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2/7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9.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2. 28. 접수 제91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7. 30. D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16. 공시송달로 'D는 원고에게 11,231,574원 및 그중 2,799,127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398490,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D의 부(父)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9.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인 F, G, H, D(상속지분 각 2/11)가 있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망인이 공유하는 6/7 지분에 관하여 2020. 2. 28.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는 물론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D는 시가 493,120원 상당의 아벨라델타 승용차(199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피고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을 피고에게 전부 이전한 것일 뿐 D의 채무초과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 $12/77 (= \text{망인의 공유지분 } 6/7 \times \text{D의 상속지분 } 2/11)$ 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북도 익산시 대 403.0 m²2. 전라북도 익산시 대 347.6 m²3. 전라북도 익산시 ,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브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7.8m²

부속건물

브럭조 스테이지붕 단층 창고

16m²

